■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10.>

소방서 구조대·안전센터
전화)

구조활동일지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구조대장 (센터장)

일련번호	-							
신고 일시	20 . . . :	신고자	성 명		신고 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인터넷 [ ]기타	접수자	
			연락처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시각	거리	걸린 시간		관할 지역	[ ]관할 [ ]관할 외
			:	km	(분)			
구조 완료 시각	:	구조에 걸린 시간	(분)		귀소시각	:		
사고 장소	주소						관계자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도로·철도 [ ]하천·바다 [ ]산 [ ]논밭·축사 [ ]공장·창고 [ ]판매시설 [ ]도시공원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운수시설 [ ]교육·연구시설 [ ]작업·공사장 [ ]의료시설 [ ]기타

사고 원인

[ ]화재 [ ]폭발 [ ]붕괴 [ ]교통 [ ]위치추적 [ ]수난 [ ]산악 [ ]기계 [ ]승강기 [ ]잠금장치 개방 [ ]인명갇힘 [ ]동물포획
[ ]벌집제거 [ ]추락 [ ]자연재난 [ ]가스 [ ]전기 [ ]유류·위험물 [ ]유해화학물질 [ ]자살추정 [ ]안전조치 [ ]기타

범죄 의심

[ ] 경찰통보 [ ] 경찰인계 [ ]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 ] 기타( )

긴급 분류

[ ]긴급 [ ]준 긴급 [ ]잠재 긴급 [ ]대상 외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전개됨), 잠재 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준 긴급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활동 개요

조치 사항		특이사항	

요구조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성별	직업	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동원 인력

[ ]소방: 명 [ ]기타: 명( )
소방인원:

동원 장비

[ ]차량: 대 [ ]장비: 외 점( )

구조 인원

■ 계: 명 [ ]사망: 명 [ ]부상: 명 [ ]기타: 명

구조 실적

처리 내용	[ ]인명구조	[ ]안전조치	[ ]인명검색	[ ]기타 활동
미처리 내용	[ ]자체처리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상습악의

장애 요인

[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 ]차량노후 [ ]장비고장 [ ]장비부족
[ ]인력부족 [ ]장애없음 [ ]기타( )

구조 효과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 ]사망 가능 [ ]심각한 상태·상황 악화 [ ]약간의 상태·상황 악화 [ ]유사 결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